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 | |
|------------|-----|
| 의 안 번 호 | 631 |
|------------|-----|

발의연월일 : 2016. 7. 1.

발의자 : 이종배 · 정우택 · 김석기

박인숙 · 정유섭 · 이우현

곽상도 · 김광림 · 주호영

배덕광 · 경대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한자어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 할 것임.

이에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법률 제 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① 결 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 필증 또는 등록증, 그 밖에 여 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u>당해</u>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 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 <p>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① --</p> <p>-----</p> <p>-----</p> <p>-----</p> <p>-----</p> <p>- <u>해당</u> -----</p> <p>-----.</p> <p>② (현행과 같음)</p> |